

변리사 합동사무소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방안 마련

<2023. 0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심미랑 연구위원/법학박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분야 전문직종 관련 법에서는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있지 않았음
-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인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이 공포(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 개정법 제6조의2 제5항에서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타 분야 전문직종의 합동사무소 설립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변리사 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고방법, 절차, 필요서류 등 마련

* (참고법령) 법무사법 제14조 및 법무사규칙 제25조/ 관세사법 제9조, 시행령 제19조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사 고시') 제28조~제31조/ 행정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 舊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01호, 2010. 11. 19. 일부개정, 2010. 11. 26. 시행) 제19조 및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0호, 2010. 12. 10. 일부개정, 2010. 12. 10. 시행) 제9조·제10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8조 등(자세한 법규정은 **[붙임 6] 참조**)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가 다른 변리사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령 제13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현행 관련 규정

[변리사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 법 제3조제2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제6939호, 1973. 11. 26. 일부개정, 1973. 11. 26. 시행시부터 존재 (구 시행령 제18조의2)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현재 변리사 등록시 변리사 등록신청서에 사무소(예정 포함) 명칭,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 절차와 개업 등의 신고 절차 & 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와 구분이 불분명함(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1안: 현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고 개별 항을 만들어 규정하는 방안]

시행령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제2안: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시행령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제1안)은 현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제1항에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

※ 제1안에 따른 경우,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서 함께 규정할지 순서에 대한 논의 필요: i) 제1항에서 해당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설치 절차에 대한 언급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인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어, ii) 제2항 및 제3항에서 합동사무소의 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후, 제4항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순서가 보다 자연스럽다고 판단됨

○(제2안)은 시행령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를 신설하여 제1안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안

- 현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가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와 변리사 사무소를 별개의 사무소로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규약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사무소의 설치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2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구성원’ 용어의 적절성]

- 변리사 합동사무소와 관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성원’의 의미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 변리사 합동사무소의 ‘조합원’으로서 ‘구성원’ 변리사를 의미
-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인 민법 제703조~제724조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계 및 판례 등에서는 ‘조합원’과 ‘조합 구성원’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등)
- 타 분야 전문직종의 합동사무소 설립 관련 법령에서도 법무사 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4호,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 등에서 ‘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에서도 “구성원”이라는 표현 사용
-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와 혼동의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변리사법에서 합동사무소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를 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고, 기존에 전문직종 관련 법인과 합동사무소의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사 법령에도 법인의 ‘구성원’ 및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이라 하여 모두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음
- 이에 변리사 합동사무소와 관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합동사무소의 조합원으로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문해설)

- (1) 변리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1안 시행령 제13조 제2항, 2안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참조조문) 법무사규칙 제25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舊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2016. 4. 26, 개정시 삭제),¹⁾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1조 등

- 관세사 고시 제28조에서는 관세사 합동 사무소 등록신청서에 별도의 규약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 체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관세사 고시 제28조 제1항)
- 다른 법규에서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규약의 구체적 기재사항과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1안 시행령 제13조 제3항, 2안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 입법의 탄력성과 다른 유사 법률에서도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거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

※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14조 제6항, 행정사법 제14조 제6항,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관세사 고시 제28조~31조 등

(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변호사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도록 함(1안 시행령 제13조 제4항, 2안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현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가 변리사 업무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법 제3조 제2호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

1)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인노무사의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구 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2항(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에도 제3조 본문에 따라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현 시행령 제13조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

-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변리사법에서는 무자격 대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가 변리사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 1)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모두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인 경우와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와 변리사 자격만 있는 자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합동사무소는 해당 구성원인 변호사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래의 舊세무사법(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제13조 제2항과 제13조의2의 규정을 참고해 볼 때, 합동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현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법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 現세무사법 관련 규정 및 舊세무사법 연혁]

-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2항에서는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 舊세무사법(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제13조의2에서는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3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2002. 12. 30. 개정시 제13조의2 삭제,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신설**(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시행)
- 舊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 존재
- 舊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舊세무사법 제13조의2의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 됨

- 현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 세무사법 관련 규정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이외에 법 제2조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현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고 개별 항을 만들어 규정하는 방안]

시행규칙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변리사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라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안: 시행규칙 제11조의6을 신설하여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시행규칙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라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

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합동사무소 설치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②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변리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안)은 현 시행규칙 제11조(개업 등의 신고)의 제목을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로 변경하고, 현 시행규칙의 내용을 제1항에 규정하고 이하에서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
- 변경된 조문의 제목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 등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

[현행 시행규칙 제11조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의 제11조 제1항의 비교]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법무사 규칙 제25조 제1항, 관세사 고시 제28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서는 모두 신고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현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대부분의 규정에서는 “별지 제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반면,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는 변리사 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구분 기준 명시 필요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이외에

“별지 제0호 서식에 따른다.” 는 표현의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 조문]

현행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 정 안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라 조직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안)은 시행규칙 제11조의6(합동사무소 설치의 신고)을 신설하여 제1안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안

-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2안이 보다 적절하나, 현 시행규칙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서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등 특허법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11조의6에서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문 흐름상 부자연스럽고 별지 서식의 번호순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제1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이하, 조문해설은 제1안을 기준으로 기술함)

○ (조문해설)

1.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 제1항

(1)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 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현 시행규칙 제11조의 제목을 “개업 등의 신고”로 하여 “개업 등”에 변리사의 개업*, 휴업, 폐업, 사무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

* 여기서 ‘개업’은 휴업 후 ‘업무재개’를 의미

-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는 조문의 제목을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규정에 “사무소 설치”가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변리사법 제6조 제2항에서 나열한 신고사항을 풀어서 기재하였음

(2) 변리사 등록절차와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절차를 구분하고, 현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은 변리사 등록을 위한 절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는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신청, 개업·휴업 및 폐업신고와 관련된 사항만을 남기고(**[붙임 1] 참조**),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를 위한 서식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신설(**[붙임 2] 참조**)

- * 현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변리사 등록신청서에는 사무소(예정)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무지 또는 근무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사무소 설치 신고를 위한 양식이라고 볼 수 없음
- 기존에 별지 제8호서식에 포함되어 있던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도로 분리하여,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규정(**[붙임 4] 참조**)

2.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 (1)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i)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ii)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i)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규약을 제출하도록 함

※ (참조조문) 법무사 규칙 제25조 제1항, 관세사 고시 제28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규에 자세히 규정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합동사무소 활동에 대한 규제 및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항만을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며 합동사무소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

- (2) 합동사무소 설치, 변경, 해산* 등의 신고를 위한 서식을 별지 제8호의3 서식으로 신설(**[붙임 3] 참조**)

* 합동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폐업” 대신 “해산”이라는 용어 사용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 및 특성]

• 「민법 제3편 채권 제13절 조합(제703조~제724조)」에서 조합에 대하여 규정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보다 조합이 편리 •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u>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u>하는 때 성립, 낙성·쌍무·유상 계약 • 조합의 업무처리는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되, 계약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긴 경우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름(민법 제706조)

- 조합재산은 합유(合有)(민법 제704조), 청산 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실과 이익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민법 제711조, 제712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20조), 청산의 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분(민법 제724조 제2항)

[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 차이점]

-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개성과 이해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 각 조합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조합원의 지위로부터 나오며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진행할 수 있음(민법 제706조 제3항)
- 이와 같이 조합은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집행이 대표기관인 이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단법인 내지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구별됨
-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 전체의 공동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여(민법 제706조 제1항),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즉,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의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행위인데, 변리사 합동사무소의 공동사업은 변리사 업무이고, 변리사 합동사무소는 구성원인 변리사 모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 구성원 모두가 업무집행을 하는 형태로 별도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조합 계약에 따라 구성원 모두를 대표변리사로 하거나, 구성원 중 일부를 특정행위에 있어서 대표자로 선정하거나, 업무분야 별로 업무집행자를 선정하는 등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합동사무소 설치·변경·해산 신고시 대표자는 민법 제709조에 따라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3)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의 변경사항 신고 주체와 관련하여 관세사 고시 제19조 제2항에서는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에서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사법 시행규칙과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참조하고,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주체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변경사항 신고주체도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로 규정

- 단, 신고양식인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신고인' 부분에는 조합인 "합동사무소"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병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
· 변경 신고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참조

3.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 제5항

(1) 법 제6조의2 제4항에서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신고서 제출은 변리사회에 하도록 하되 변리사회는 지체 없이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규정

※ (참조조문) 법무사 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방법무사회가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사 고시 제28조 제1항과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각각 신고서를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별도로 관세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과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2) 참조조문을 참고하여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 논의 필요

4.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1) 기존에 별지 제8호서식에 포함되어 있던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변리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신청, 개업·휴업·폐업 신고절차와 별도로 분리하여,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르도

록 규정([붙임 4] 참조)

- (2) 조문순서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 서식번호를 기존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서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정비([붙임 5] 참조)

○ (변리사 합동사무소의 법적성격 및 운영방안)

1. 법적성격

- (1) 변리사 합동사무소의 법적성격은 변리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소로 법적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특허청 소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참고자료 (의사일정 제1항~제8항) (2022. 11. 22.), 2면

※ (참조조문) 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3항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약정(조합계약)에 의해 설립되며, 법인과 달리 조합 구성원인 변리사의 개성이 중시되어 조합원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이 있음

- (3)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하나*, 조합계약에 따라 업무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책임,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참조조문) 관세사 고시 제29조(운영) ①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운영방안

- (1) 대리인코드 :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및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조합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대리인코드는 조합 구성원인 변리사 마다 부여된 대리인 코드를 사용
- (2) 공동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

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변리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변리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3) 개별 사업자등록 : 각 변리사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와 책임도 서로 독립적이나, 사무실 명칭과 공간만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금지되지 아니하며,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널리 운영되고 있는 형태임

- 그러나 이는 공동사업경영을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변리사법 제6조의2 제3항에서 입법적으로 고려한 합동사무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4) 결론

→ (1안) 여러 명의 변리사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소 명칭과 사무실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방지를 위하여 '합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2안) 법에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되는 합동사무소의 형태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널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리사 각자 개별 사업자등록을 받아 사무소 명칭과 사무실만 공유하는 경우에도 '합동사무소'라는 명칭 사용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불임 3-1] 참조)

- 합동사무소의 성질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해석(민법상 조합, 공동사업자등록)과 실질적 운영 형태(구성원별 개별 사업자등록)를 모두 반영하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가 가능하도록 (2안)으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구성원별 사건전담 및 책임사항”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안 제11조 제2항에서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도록 한 규약의 내용 중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붙임 3-1]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함

※ 참고로 대한법무사회 회칙 제63조(사건부) 제3항에서는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사건부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각인별(各人別)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사건접수부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여 공동사업자등록과 개별 사업자등록 형태의 합동사무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국세청 훈령 제2532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등록취소 신청서
[] 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업은 휴업 후 업무재개를 의미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	(한글)		등록번호	제 호
		(한자)		전화번호	
	주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사항	변리사 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 및 전공·주요경력, 사무소(법인) 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변리사 인감 등			
	변경내용				
등록취소 신청	사유				
개업(업무재개)/ 휴업/폐업 신고	구분	[]개업(업무재개) []휴업 []폐업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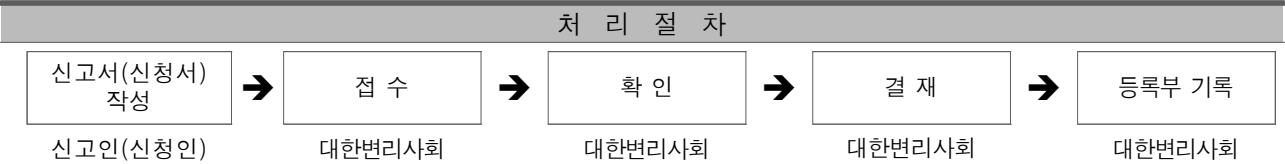
「변리사법」 제5조의3제2호·제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9조의2·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등록취소 신청, [] 개업(업무재개), 휴업, 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휴업 신고시 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보자격득실확인서 등)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무소 [] 설치
[] 이전 신고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사무소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무소 “이전” 으로 체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변리사 정보· 사무소 설치 신고	성명	(한글)	등록번호	
		(한자)	전화번호	
	자택 주소			
	사무소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변경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			
이전 신고	이전 일자			
	이전 사무소 주소			
폐지 신고	폐지 일자			
	폐지 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소 []
설치, [] 이전, [] 폐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대한변리사회	→ 확 인 대한변리사회	→ 결 재 대한변리사회	→ 등록부 기록 대한변리사회

합동사무소 [] 설치 [] 변경 신고서 [] 해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설치 신고	기본 정보	사무소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성명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변리사	성명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변리사	성명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	변경 사항	사무소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등	
	변경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해산 신고	해산 일자		
	해산 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합동사무소 [] 설치, [] 변경, [] 해산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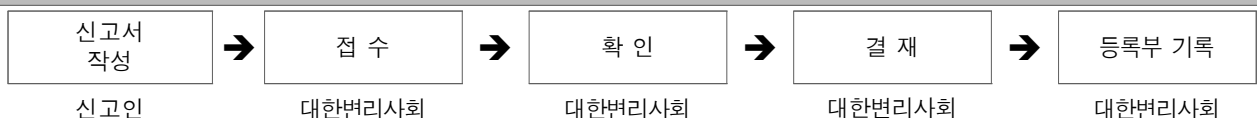
○○ 합동사무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합동사무소 [] 설치 [] 변경 신고서 [] 해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1개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재, ☐ 구성원 별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	----

설치 신고	기본 정보	사무소 명칭		☐ 공동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성명		☐ 변리사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주소			
	구성원 변리사	전화번호			
		성명		☐ 변리사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원 변리사	자택주소			
		전화번호			
		성명		☐ 변리사 등록번호	
	구성원 변리사			☐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	변경 사항	사무소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등
	변경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해산 신고	해산 일자	
	해산 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합동사무소 [] 설치, [] 변경, [] 해산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합동사무소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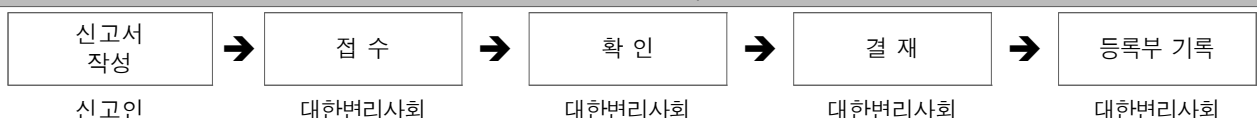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속변리사 신고·변경 신고서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법 인	명칭	(한글)	법인 인가번호		
		(영문)	제 호		
	주사무소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소속 변리사 신고· 변경신고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신고구분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변리사법」 제6조의4제2항·제6조의1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소속변리사 신고·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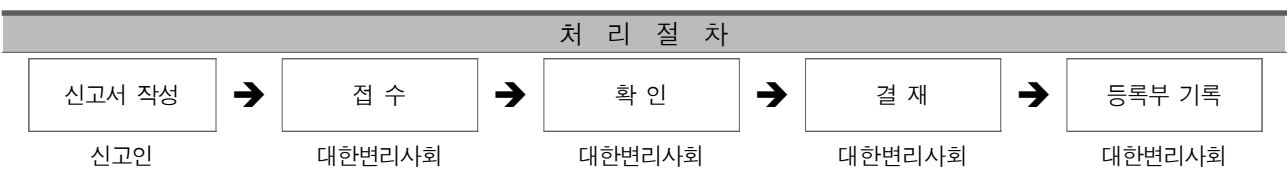
신고인 ○○법인

대표변리사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해산 신고서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법 인	명 칭	(한글)	법인 인가번호 제 호
		(영문)	
	주사무소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청산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변리사 등록번호 제 호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9제2항·제6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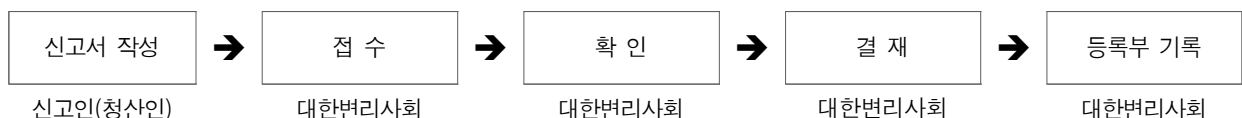
청산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6] 타 전문직종 관련 법규정

법무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법무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u>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用)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用)을 높이기 위하여 <u>개업노무사 2명 이상</u>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27.>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평가법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u>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u>를 두어야 한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25조(합동사무소)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세사법 시행령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舊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1호, 2010. 11. 19. 일부개정, 2010. 11. 26. 시행] 제19조(합동사무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대통령령 제27108호, 2016. 4. 26. 개정시 삭제></u>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u>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u>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u>2명</u>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u>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③ 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호) 제6장 합동사무소 제28조(합동사무소의 등록)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u>별지 제6호서식</u>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 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 계획 관련 서류 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 조직체계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u>별지 제7호서식</u>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④ ~ ⑤ (삭제) 제29조(운영) ①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벌칙 등) ① 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② 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 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3의2. 소속 행정사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4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舊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호, 2010. 12. 10. 일부개정, 2010. 12. 10. 시행] 제9조(합동사무소의 운영 규약) 영 제19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에는 해당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노무사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개업노무사가 영 제19조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에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개업노무사의 가입과 탈퇴 3.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내용의 변경 4.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2016. 4. 26. 개정시 위의 제9조 제10조 삭제>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	---	---	---

	세사가 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등)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다.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	---	--